

특 집 : 학교보건정책의 현재와 미래

양호교사의 분포 및 학교보건사업의 활성화

김 영 입

한국방송대학교 보건위생학과

I. 문제제기

학교보건사업은 학생, 교직원 및 가족,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보건서비스와 환경관리, 보건교육을 통해 건강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신체, 정신, 사회적 기능을 안녕 상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지역사회의 학부모와 교육자, 학교보건 사업제공자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우리 나라의 학교보건사업은 1949년 교육법 89조의 '학교보건사업의 실시와 양호시설의 설비에 대한 규정'에 따라 학교보건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했수로 반세기에 접어들었으나 구체적인 학교보건사업의 실시는 이로부터 십 수년이 지난 1967년 학교보건법과 1969년 학교보건법시행령의 제정으로부터 비롯되고 있다. 학교보건법과 시행령의 목적은 학교의 보건관리와 학교위생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증진하게 하고 학교교육의 능률을 기하는 것이다. 그간 이 법은 변화되는 학교사회환경에 부응하여 수차례 개정되면서 학교보건사업의 방향을 안내하고 있다.

학교보건사업이 최근의 학교인구 및 사회적 건강요구를 감안하여 명실공히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변화되는 사회환경적 요소가 반영된 학교보건정책수립이 이루어져야 하며, 일선 학교에서 업무수행이 효과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학교단위에서의 효과적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업수행을 위한 인력과 기술이 필요하다. 이에 여러 보건의료전문가를 포함한 학교보건인력의 참여가 필요하겠으나 무엇보다 학교보건사업을 전담하는 전임교원으로서의 양호교사의 확보가 필수적이라 하겠다. 학교보건활동의 대부분은 양호교사에

의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며, 양호교사가 학교보건사업의 가장 효율적인 인력이라는데 대해 학교보건관련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다. 이러한 양호교사가 여러 여건을 고려하여 충분히 배치되고 역할을 더욱 잘 개발한다면 학교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학교보건법과 학교보건법시행령을 근간으로 하여 학교보건조직, 학교보건정책 및 학교상황변수는 양호교사분포양상에 영향을 미친다(김화중, 1984)고 보고되고 있다. 즉 교육위원회, 지역, 학급수, 학생수, 교원수가 양호교사 배치와 관련된다고 하였다.

최근 중앙 및 지방 학교보건조직의 약화, 이에 따른 정책방향의 혼선 등으로 양호교사 정원 산출기준이 강화되어 양호교사배치가 감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학교보건사업의 수행에 커다란 장애요소가 되고 있으며,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권보장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성장기의 학생이 평생을 좌우할 건강생활습관 조성 과 건강에 관한 지식 및 태도의 습득은 학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학교보건을 담당하는 양호교사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도관리로서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일련의 정책제시는 정책의 일관성결여로 인해 양호교사수의 무분별한 감축과 이에 따른 무리한 업무점임등으로 30년전으로 역행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학교건강권보장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이에 본 발표에서는 양호교사의 분포양상, 학교보건조직의 변화와 양호교사의 업무를 분석하면서 2000년대 양호교사의 발전적 역할전환을 위한 대안을 강구해 보고자 한다.

II. 양호교사의 분포양상

1. 양호교사의 배치기준

양호교사의 분포는 양호교사배치에 관한 규정에 크게 적용받는다. 양호교사배치에 관련된 규정은 교육기본법을 위시하여 초중등교육법, 학교보건법에 적용을 받는다. 교육기본법에는 27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 및 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에 따라 학교의 건강을 위하여 학교보건업무 수행하여야 할 학교인력의 배치는 필수적 사항이다. 이와 관련해 교육법시행령(33조 3항)에는 초등학교에는 양호교사를 둘 수 있으며, 18학급이상의 초등학교에 양호교사 1인을 두어야 한다고 하였고, 중학교와 고등학교에는 양호교사를 둘 수 있다(34조 및 35조 3항)고 하였다. 한편 학교보건법시행령에는(6조 1항) 학교보건법 15조 규정에 의하여 18학급이상의 초등학교에는 양호교사 1인을 두고, 중학교와 고등학교에는 양호교사 1인을 둔다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18학급이상 초등학교에는 양호교사를 둔다'는데 대해 교육법이나 학교보건법이 일

치하지만 중고등학교 양호교사배치에 대해서는 학교보건법(둔다)에서 교육법(둘 수 있다)보다 적극적으로 양호교사의 배치를 권장하고 있다. 이러한 법령에 의하여 우리나라의 양호교사가 배치되고 있으나 두 법령간 차이로 인하여 지역간 학교설립주체간 양호교사 배치는 크게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2. 연도별 양호교사분포

지난 30년간 양호교사의 수는 양적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1968년 729명이던 양호교사는 1998년 5,932명에 이르러 지난 30년간 8.1배 증가하였으며, 양호교사 1인당 학교수는 같은 기간 8.7개교에서 1.8개교로 감소되었고, 양호교사 1인당 학생수는 9,359명에서 1,302 명으로 감소하였다. 양호교사 배치율은 9.2 %서 56.7%에 이르러 6.2배 향상되었다(표 1 참조, 그림 1).

자료에서 보듯이 양호교사분포는 양적인 측면에 있어 지난 30년간 괄목만한 성장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98년 현재 학교당 양호교사 배치율은 57%에 불과하며, 양호교사 1인당 학교수는 1.7개교, 학급수는 35학급으로서 만족할만하지 않다.

표 1. 지난 30년간 양호교사의 분포 변화

	1968년	1978년	1988년	1998년
양호교사수(명)	729	1,281	3165	1932
양호교사 1인당 학교수(개)	10.8	7.6	3.4	1.7
양호교사 1인당 학급수(개)	152.5	131.1	63.9	35.4
양호교사 1인당 학생수(명)	9,359	7,304	3053	1382
학교 양호교사배치율(%)	9.2	13.2	29.7	56.7

연도별 양호교사 배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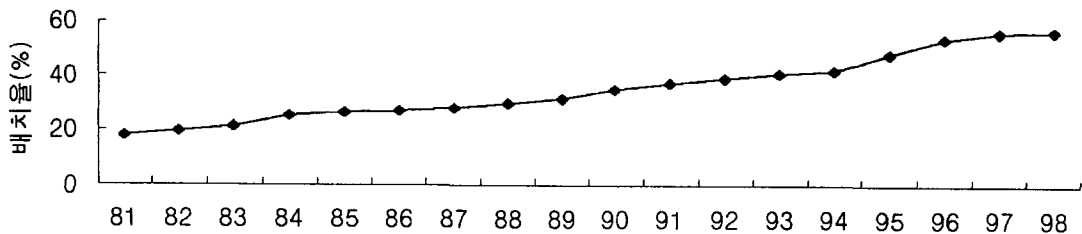


그림 1. 연도별 양호교사의 배치율 (1981-1998년)

연도

일본의 경우 초·중·고등학교에 양호교사 각 1인을 배치하고 있으며, 대만은 1교 1인배치를 원칙으로 72학급 이상에는 2인을 배치하고 있다. 또한 미국이 경우 미국의 경우 학교간호사 배치기준은 학교단위이며, 학교단위의 변수는 학생수로서 학교보건협회가 추천한 학교간호사 1인당 학생수는 1,000명으로(김화중, 1984) 선진형 보건 복지와 교육정책을 준비하는 현시점에서 추가적인 양호교사 배치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3. 학교급별 양호교사분포

우리나라의 양호교사 분포가 전체적으로 선진국 수준에 유사한 상태이지만 학교급별이나 학교설립주체, 지역별로 심한 불균형분포를 보이는 것이 전체 학교보건사업을 균형있게 발전시키는데 커다란 저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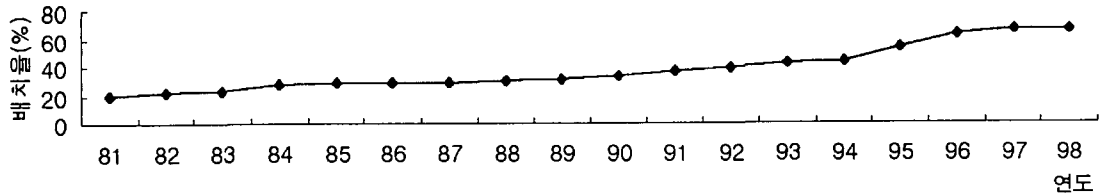
요인이 되고 있다.

우선 초중고별로 살펴 볼 때 (표 2, 그림 2 참조) 초등학교는 양호교사 1인당 학생수가 1,011명으로 양호한 양호교사 배치율을 보이지만 중고등학교에서는 1,800명에서 2,600명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고등학교의 양호교사 1인당 학생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배치율은 중학교에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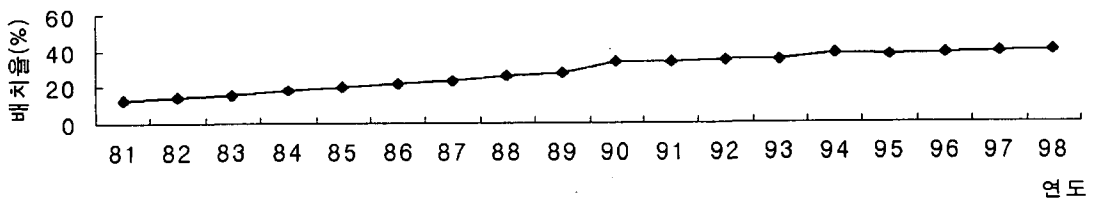
표 2. 학교급별 양호교사 분포(1998년 현재)

내용	학교급				
	초등	중등	일반고	실업고	특수
양호교사수	3793	1081	543	403	112
양호교사 1인당 학교수(개)	1.5	2.5	2.1	1.9	1.1
양호교사 1인당 학급수(개)	29.0	45.6	52.6	48.8	21.4
양호교사 1인당 학생수(명)	1011	1861	2577	2301	207
학교 양호교사배치율(%)	66.6	39.5	47.2	52.2	9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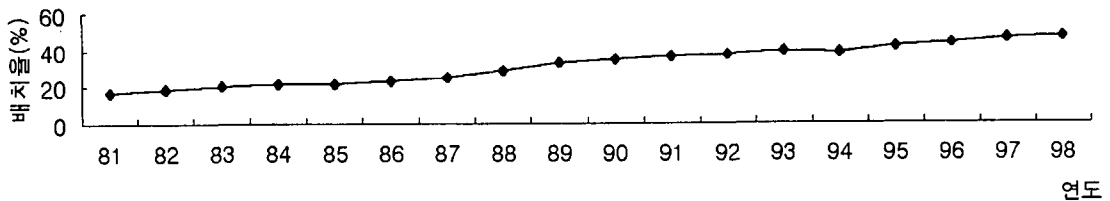
연도별 초등 양호교사 배치율



연도별 중등 양호교사 배치율



연도별 일반계 고등학교 양호교사 배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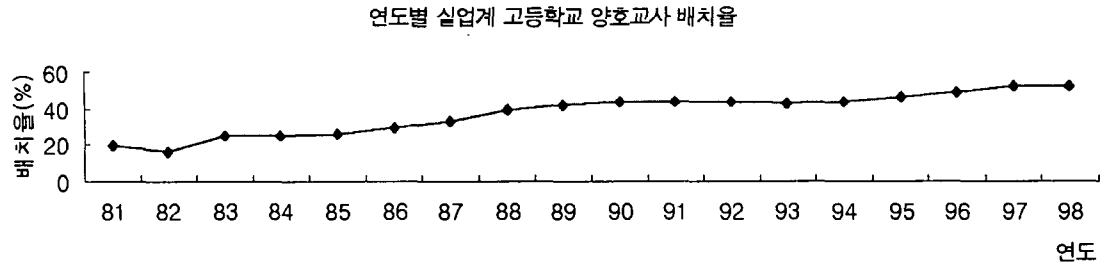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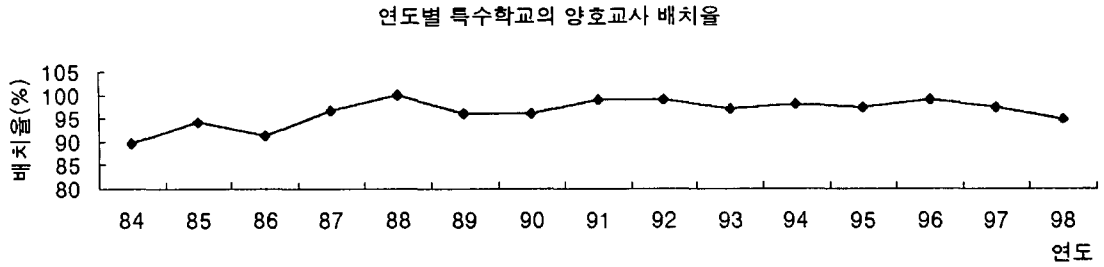


그림 2. 연도별 학교급별 양호교사의 배치율

4. 설립주체별 양호교사분포

1981년이후 양호교사의 분포를 설립주체별로 살펴보면 국립 및 공립학교는 1981년에 각각 31.2%와 17.6%였던 것이 1998년에는 74.5%와 60.4%로 크게 증가한 반면, 사립학교는 29.4%에서 38%로 미미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표 3 참조). 이를 다시 설립주체별 학교급별로 구체화해서 보면 1998년 현재 사립 중학교의 양호교사 배치율은 23.4%(표 4 참조, 그림 3)에 불과해 가장 낮은 상태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한창 사춘기 및 성장기에 있는 학생에 대한 건강 관리가 충분히 실시되지 할 수 있음을 예측하게 한다.

표 3. 연도별 설립주체별 양호교사 배치율(%)

학교	1981년			1991년			1998년		
	학교수	배치수	배치율	학교수	배치수	배치율	학교수	배치수	배치율
국립학교	32	10	31.25	43	27	62.79	47	35	74.47
공립학교	8518	1497	17.57	8793	3354	38.14	8655	5228	60.40
사립학교	1543	315	20.41	1711	531	31.03	1761	669	37.99
계	10093	1822	18.05	10547	3912	37.09	10463	5932	56.69

자료원 : 교육부 통계연보('81-'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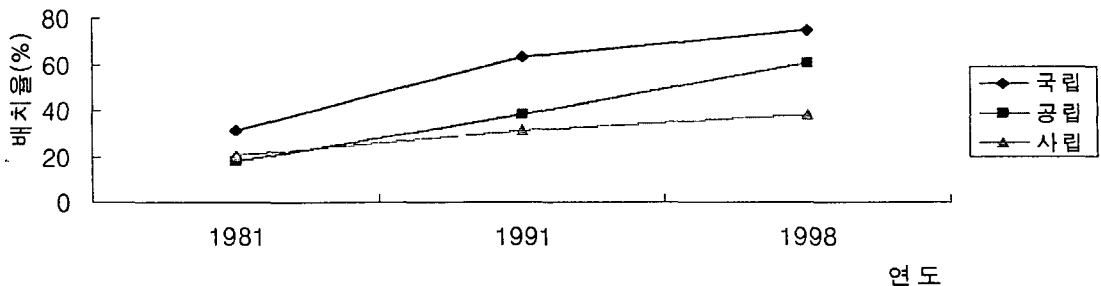


그림 3. 연도별 설립주체별 양호교사 배치율

표 4. 학교급별 설립주체별 양호교사 배치율(%)

연도	1981년				1991년				1998년					
	초등	중등	일반 고등	실업 고등	초등	중등	일반 고등	실업 고등	특수	초등	중등	일반 고등	실업 고등	특수
국립학교	43.75	40.00	16.66	20.00	94.11	33.33	9.09	100.00	100.00	100.00	44.44	33.33	100.00	100.00
공립학교	19.70	11.28	9.06	12.18	36.62	39.18	45.31	44.64	100.00	66.75	44.90	54.07	56.56	94.44
사립학교	37.66	14.25	23.84	26.64	46.05	20.00	29.49	40.76	98.57	53.94	23.36	41.37	45.23	94.87

자료원 : 교육부 통계연보('81-'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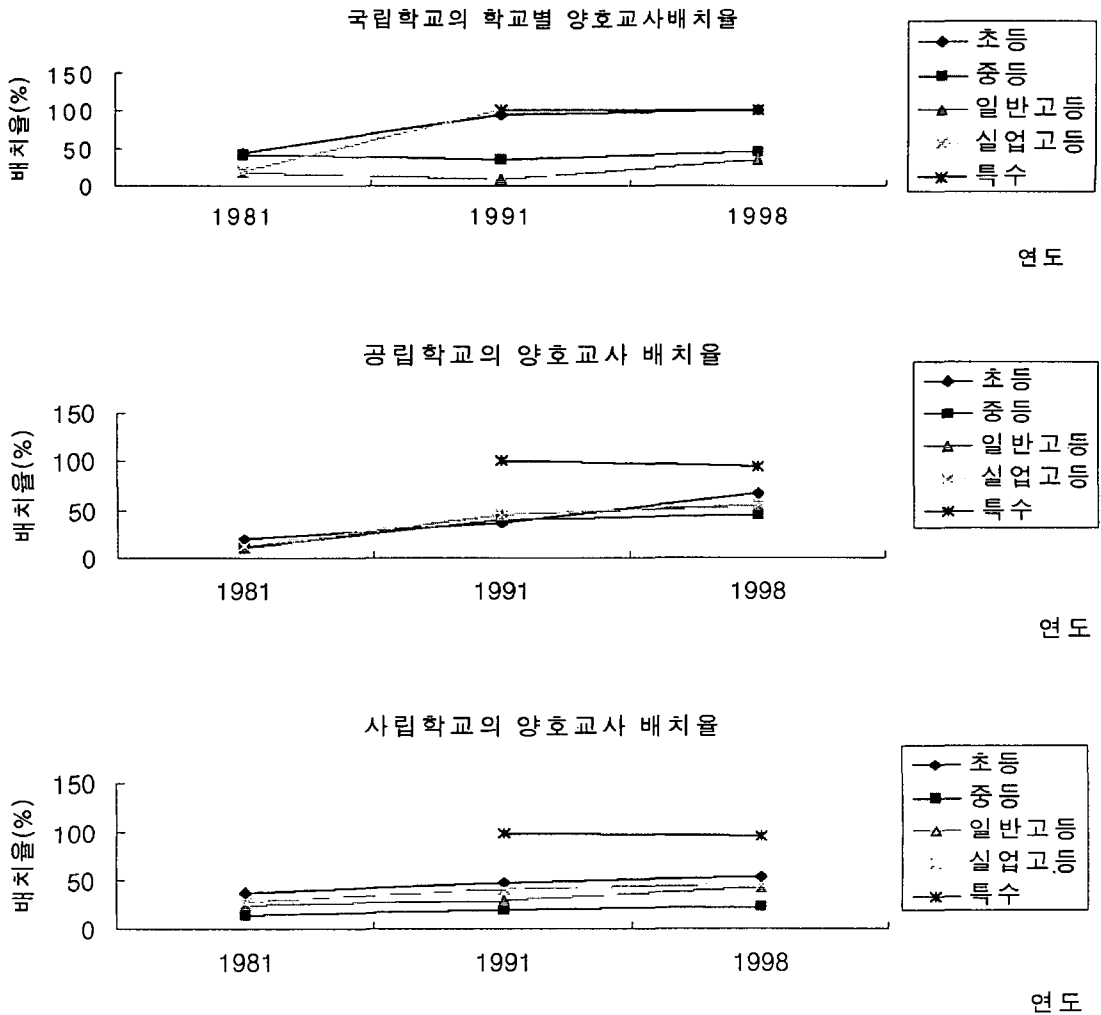


그림 4. 학교급별 설립주체별 양호교사 배치율

5. 지역별 양호교사 분포

한편 지역별 양호교사의 배치율 차이도 크다(표 5, 그림 4참조). 1981년에 10%미만의 낮은 배치율을 보인 지역은 제주와 경남으로서 3%~5%수준이었으며 서울은 87%의 분포를 보였는데 1998년에는 전남, 경남, 경북등이 34%~40%로 낮았고, 서울은 93%의 배치율을 보이고 있는데 지역별 차이는 여전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 1998년 현재 서울만이 90%가 넘는 수준을 보일 뿐 60%미만의 배치율을 보이는 지역은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으로서 대다수지역의 배치율은 높지 않다. 행정조직은 행정관서인 각 시도 교육청 교육감의 의지여하에 크게 달려있는데 법조항의 상치성때문에 배치의 차이가 크다. 그러므로 지방자치시대에 지역별 고위

정책자가 지역의 보건의료환경을 고려하여 양호교사의 배치의지를 갖도록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별 설립주체별 학교급별 차이도 크다(부록 표 3 참조). 1981년에 국공립의 경우 4%에서 99%, 사립의 경우 3%에서 72%로서 사립은 낮고, 국공립의 배치율이 전반적으로 높는데, 1998년에는 국공립이 41%~96%의 범위인 반면 사립은 5%에서 85%를 범위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지역간 차이와 아울러 설립주체간 차이는 1998년에 가장 높은 배치율을 보이는 서울도 사립학교는 85%수준이며, 직할시인 부산은 15%에 불과하고, 충남, 경남, 경북지역은 10%미만의 아주 낮은 배치율을 보이고 있어 시간이 지나면서도 사립학교의 양호교사 배치율이 국공립에 비해 낮은 상태로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5. 지역별 설립주체별 양호 교사 배치율(%)

	1981년			1991년			1998년		
	국·공립	사립	계	국·공립	사립	계	국·공립	사립	계
서울	99.2	72.0	87.1	96.0	82.1	91.9	96.9	84.7	92.6
부산	51.8	12.5	40.0	84.4	17.5	68.1	84.0	15.1	80.9
경기	13.2	9.4	12.5	40.0	29.9	37.9	67.0	50.0	64.3
강원	7.4	7.9	7.4	21.8	2.8	20.9	44.3	37.8	49.2
충북	15.4	2.4	14.4	36.9	13.6	34.9	72.6	54.2	70.7
충남	11.9	5.6	10.9	25.0	4.3	22.7	57.3	5.4	51.0
전북	17.2	14.8	15.7	25.1	32.3	26.1	51.2	46.3	50.4
전남	16.5	7.8	15.7	21.6	16.0	21.1	35.4	24.5	34.4
경북	16.0	7.1	14.6	24.1	8.4	21.9	51.8	9.3	44.8
경남	5.6	4.0	5.3	25.6	9.8	23.3	46.3	5.5	39.4
제주	3.7	0.0	3.4	25.9	17.6	25.1	40.9	27.8	3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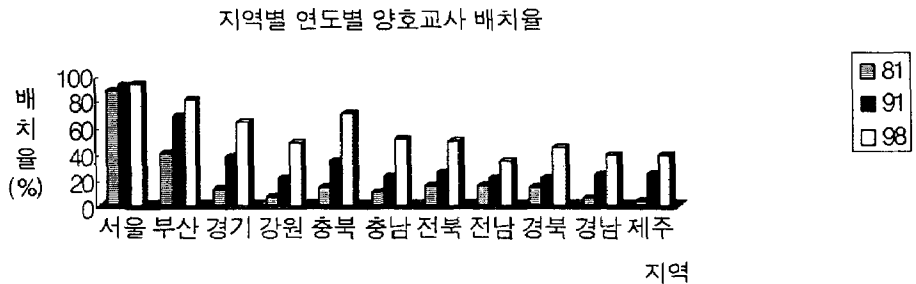


그림 5. 지역별 연도별 양호교사 배치율

6. 학급규모별 양호교사의 분포

학급규모별로 양호교사의 분포양상을 보면(표 6, 그림 5참조) 18학급이상 학교의 양호교사배치율은 초등학교가 89%, 중고등학교가 76%인 반면 18학급미만의 양호교사 배치율은 초등학교가 42%, 중고등학교가 14%로 나타났다. 18학급이상 학교의 양호교사 배치율도 충족할 만한 상태는 아니지만 18학급미만의 양호교사 미배치학교수는 초등학교가 1,264개교, 중고등학교가 1,156개교나 되어 이들 학교의 학

교건강관리의 부재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표 6. 학급규모별 학교급별 양호교사 배치율(%)

	18학급이상			18학급미만		
	학교수	양호교사수	배치율	학교수	양호교사수	배치율
초 등	2442	2170	88.8	2181	915	41.9
중·고 등	2130	1615	75.8	1344	192	1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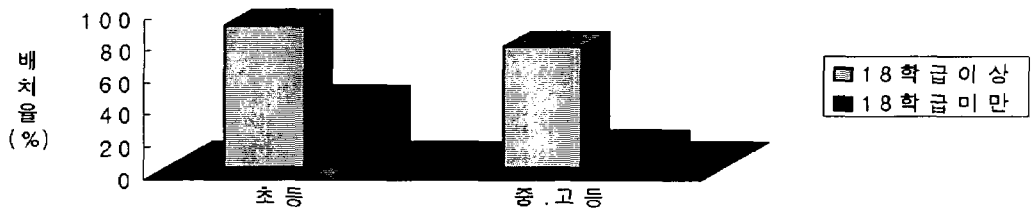


그림 6.

학급규모별 양호교사 배치를 지역별로 보면(표 7, 그림6)과 같이 서울, 울산이 100%이고, 부산이 97% 수준인에 비해, 전남은 49%에 불과하며, 대구, 제주 등은 60%대의 수준에 불과하며 나머지 지역들은 70~80%대에 머물어 관계법령의 기준을 충족하

지 못하고 있다.

이들 학교의 보건관리를 위하여 양호교사를 타 학교에 겸임발령하여 활용하는 순회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학생 건강관리에 따르는 여러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표 7. 지역별 학급규모별 양호교사 배치율(%)

	18학급이상			18학급미만		
	학교수	양호교사수	배치율	학교수	양호교사수	배치율
서울	1,111	1,111	100	18	18	100
부산	372	359	96.5	50	42	84.0
대구	322	201	62.4	38	0	0.0
인천	272	216	79.4	80	6	7.5
대전	180	127	70.5	47	16	34.0
울산	94	94	100	28	28	100
경기	913	701	76.7	608	124	20.4
강원	181	143	79.0	504	127	25.2
충북	169	151	89.3	245	173	70.6
전북	336	264	78.5	523	91	17.4
전남	279	138	49.4	684	151	22.1
경북	279	231	82.8	585	306	52.3
제주	67	44	66.6	115	25	2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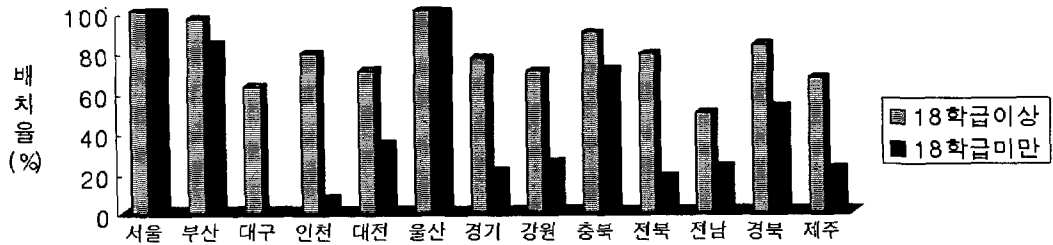


그림 7. 지역별 학급규모별 양호교사 배치율

특히 초등학교를 기준으로 하여 학급규모별로 살펴 본 결과 경기, 강원, 충북, 전남, 경북, 제주 등 다수의 지역이 90%미만의 배치율을 보여 관계법령의 최소기준도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잘 나타내고 있다. 아울러 18학급미만의 양호교사배치율은 서

울, 부산, 울산은 제외한 대다수의 지역이 20~30%대에 머물러 많은 양호교사 미배치 초등학교의 건강관리가 크게 염려된다. 양호교사 순회근무로서 포괄하고는 있지만 충분하지 못하여 근무하고 있는 학교나 겸임하고 있는 학교 둘다에서 문제가 누적되고 있다.

표 8. 초등학교의 지역별 학급규모별 양호교사 배치율(%)

	18학급이상			18학급미만		
	학교수	양호교사수	배치율	학교수	양호교사수	배치율
서울	518	518	100	18	18	100
부산	222	214	96.4	37	34	91.9
대구	151	144	95.3	28	0	0.0
인천	133	132	99.2	45	0	0.0
대전	88	84	95.4	17	5	29.4
울산	63	63	100	20	20	100
경기	477	427	89.5	380	112	29.4
강원	93	73	78.5	306	106	34.6
충북	100	81	81.0	157	141	89.8
전북	194	179	92.2	343	71	20.7
전남	167	94	56.3	392	129	32.9
경북	211	137	64.9	355	259	72.9
제주	27	24	88.8	82	20	2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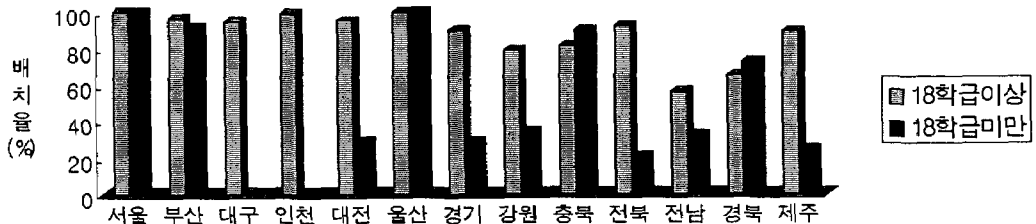


그림 8. 지역별 학급규모별 초등학교의 양호교사 배치율

III. 학교보건조직의 변천과 학교보건업무

학교보건을 정책 및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관장하는 행정기관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중앙의 교육부와 지방의 시·도교육청을 들 수 있다. 이 두 기관의 학교보건담당제도 변천을 통해 학교보건사업의 변화양상을 분석할 수 있는데 연도별로 주요한 변천과정을 보면 <표 9>와 같다.

학교보건행정 담당기구로서 1979년 문교부내 학교보건과가 설치되고, 시도교육위원회에 체육보건계가 보건계와 체육계로 분리운영하게 된 것은 학교보건발전에 중요한 조치로 남아있다. 그후 체육부가 설치되면서 중앙 행정기구의 학교보건관련직제도 변화되었는데 의무교육과 내 보건직이 1명 배치되는 정도로서 크게 위축되었고, 동시에 학교급식업무는

체육부 학교체육과에서 담당하게 되었다. 이러한 직제가 학교보건정책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없으며, 또한 개선의 높아 1986년에는 의무교육과에 근무하는 보건직이 5급으로 발령되어 학교보건업무를 총괄하게 되면서 학교보건정책의 기틀이 확립되는 계기가 되었다.

1990년이 되면서 체육부에 있던 학교급식업무는 다시 문교부로 이관되어 학교보건차원에서 다루어지게 되었고, 1994년에 학교보건체육과에서 학교보건업무를 총괄하게 되었으며, 이과는 1998년에 학교보건환경과로 개편되어 학교환경위생과 학생의 약물남용예방업무를 관장하게 되었다. 이는 다시 1999년에 학교시설환경과로 개편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학교보건정책중 정작 학교보건업무는 환경이나 시설에 가려 그 중심에서 벗어난

표 9. 연도별 학교보건업무담당조직의 주요 변천 : 중앙조직 및 지방조직

연도	조직	비고
중앙 :		
1948년	문교부 문화국내 체육과	
1961년	체육국내 학교체육과	
1963년	문예체육국내 체육과	
1970년	사회체육국내 체육과	
1973년	체육국내 국민체육과, 학교체육과, 학교급식과	
1979년	체육국내 체육과, 학교보건과, 체육교류과 : 최초로 학교보건전담과 설치	
1981년	체육국 학교체육과 : 학교보건과 폐지	
1982년	보통체육국내 의무교육과 보건직1명 배치 : 체육국은 체육부로 이관	
1990년	학교급식은 체육부 학교체육과에서 담당	
1994년	교육부 보통체육국 의무교육과 학교보건계 : 학교급식업무 문교부로 이관	
1998년	학교보건체육과	
1999년	교육환경개선국 학교보건환경과 : 정부조직개편 학교환경시설과	
지방:		
1960년말	관리국 문정과 사회체육계 학무국 사회체육과 보건체육계	
1973년	학무국 사회체육과 체육계, 보건계 : 보건계 분리 운영	
1979년	사회체육국 학교보건과 (서울등) : (학교보건계 : 인천등)	
1991년	평생교육체육과 보건계(서울등)	
1998년	학교보건, 학교급식담당	
1999년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학교보건을 담당하는 인력도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등에 그쳐 학교보건과 급식에 관한 계획수립 및 지도감독, 학교보건요원연수, 학교환경위생개선, 학생 및 교직원의 신체검사, 학생의 영양지도 및 식생활개선등 학교관련정책개발업무의 원활한 수행의 가능성을 의심하게 한다.

한편 지방조직은 1964년부터 교육자치제를 실시하면서 시도교육위원회로 이관되었다.

1979년에 사회체육과에 체육계와 보건계가 분리되면서 학교보건업무가 별도의 조직으로 운영되게 되었으며, 1991년에는 서울시 교육청에 학교보건과가 설치되었고, 1993년에 부산을 비롯해 대구, 경기,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에도 학교보건과가 설치되었다. 그러나 인천, 광주, 대전, 강원, 충북, 제주에는 학교보건계가 설치되어 1998년까지 운영되다가 1998년 이후 교육부 조직개편이후 더욱 축소운영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평생교육체육과의 보건계에서 학교보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전담과도 없이 날로 늘어나는 학교건강관리, 학교급식 및 학교환경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상과 같이 학교보건담당조직은 정부의 조직개편에 따라 여러 차례의 변천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1979년대 체육과 보건의 중요성에 따라 조직이 정비되어 운영되다가 이제는 중앙부처 및 지방조직이 위축되면서 환경과 시설의 중요성은 부각된 반면 학교보건은 상대적으로 감소되어 학교보건정책의 기본이 흔들리고 있다. 최고 정책수립기관인 중앙부처의 조직과 지방조직이 수시로 변화되고 인력이 조정됨에 따라 총괄적인 건강관리정책개발 및 일선 학교보건업무수행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IV. 양호교사의 분포와 업무수행

양호교사는 학교보건인력가운데 유일하게 학교에 상근하는 교사이므로 양호교사의 업무는 학교보건사업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차지한다 하겠다.

학교보건법에 의한 양호교사의 주요 직무는 학교보건법 시행령 6조 3항과 같이 1)학교보건계획의 수립으로부터, 2)학교환경위생의 유지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건강진단실시의 준비와 실시에 관한 협조, 4)각종 질병의 예방처

치 및 보건지도, 5)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관찰과 학교의 건강상담, 건강평가등의 실시에 관한 협조, 6) 신체허약학생에 대한 보건지도, 7) 보건지도를 위한 학생가정의 방문 8) 교사의 보건교육에 관한 협조와 필요시의 보건교육 9) 보건실의 시설, 설비 및 약품등의 관리 10) 보건교육의 자료수집 및 관리, 11) 의료행위 및 투약 12) 기타 학교의 보건관리 이다.

이러한 양호교사의 업무는 크게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건강관리, 보건교육, 학교환경관리로 구분되며, 국민의 건강 및 사회의료환경의 변천에 따라 전염병관리로부터, 신체검사, 포괄적인 건강관리, 학교보건교육으로 역할수행의 중점이 변화되고 있다. 즉, 예방접종과 신체검사, 양호실 건강관리로 대변되던 양호교사의 업무는 사고의 증가, 전염성질환의 감소와 만성퇴행성질환의 증가, 건강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 증가등으로 학교에서의 보건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학교건강증진사업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보건교육은 학교건강증진을 이끄는 데 견인차이다. 학교보건교육의 중요성은 그간 많은 연구를 통해 주장되어 왔는데 교육청의 권장사항인 양호교사에 의해 실시되는 초등학교에서의 주당 6시간의 보건수업은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에서도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1998년 경북고등학교에서 연구시범학교로 지정되어 2학년에서 정규보건수업이 진행된 바 있고, 1999년 수도여고에서 1학년학생에게 선택과목으로 보건교육이 실시운영되어 성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2000년부터 개운초등학교에서 보건교과목이 시범적으로 실시될 계획이 있어 보건교과운영을 통한 학교보건교육의 활성화는 21세기 양호교사의 주요한 업무로서 자리잡아가고 있다.

미국은 이미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학교보건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된 가운데 표준화된 학교보건보건교육과정이 만들어졌고, 학생의 건강행위변화에 역점된 학교보건교육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일본도 1980년대부터 초·중·고등학교의 보건교육 교과과정이 운영되고 있다.

사고와 만성질환예방을 위한 건전한 생활양식의 습관화는 학교건강증진을 달성할 수 있는 지름길이며, 향후 학교보건사업에서 중점적으로 수행해야 할 과제이다.

현재 양호교사가 학교건강증진사업을 위해 수행하고 있는 업무분석을 위해 WHO의 지표를 일부 수정하여 조사한 결과(김영임, 1998)에 의하면 학교보건정책, 물리적 환경, 사회적 환경, 지역사회유대관계, 개인건강기술, 학교보건서비스에 대한 6개영역, 총 60개 지표에 대해 5점 만점중 평균 3.35를 나타냈고, 중고등학교에 비해 초등학교에서의 업무수행수준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각 지표영역중 학교보건서비스에 대한 수행수준이 가장 높았으며, 특히 초등학교에서는 신체검진에 따른 추후관리와 정확한 신체사정후 투약, 응급처치함마련등 안전 사고에 대비한 행동등에 대한 준비가 잘 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중고등학교 공통적으로 행위수준이 낮은 항목은 금연구역지정 및 금연교육, 교직원을 위한 응급처치과정, 학생들에 대한 응급처치훈련, 화재시 대피책, 필요시 냉방, 학부모의 학교건강관리활동참여, 학생과 가족이 함께하는 건강관리활동, 장애학생 대한 프로그램 제공, 학생 체격에 비춘 책걸상높이 적당, 학생에 대한 물리적 언어적 폭행, 학생과 교사의 지역사회행사참여, 충분한 보건교육시간배정, 학교보건전산화프로그램 운영등이었다. 이를 보면 학생보호차원에서 실시되어야 하는 금연구역지정이나 금연교육이 부실하고, 특히 교과시간에 보건교육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고, 지역사회유대관계가 약하고, 학교전산화프로그램실시가 약해 체계적인 학교보건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분석할 때 현재 전통적인 학교보건사업요소중 학교보건서비스는 비교적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 그러나 학교건강증진을 위해 학교보건정책등 기타 영역에 관한 관심과 실천이 증대되어야 하며, 초중고별로 비교해 상대적으로 수행수준이 낮은 중고등학교에서의 활발한 업무수행을 위한 대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학교건강증진의 핵심은 보건교육의 활성화로부터 가능한데 현재 이 영역의 업무수행은 가장 취약한 부분으로서 교과시간의 배정과 아울러 적합한 교과과정개발이 시급히 요청된다. 학교건강증진업무수행에는 학교특성변수보다는 양호교사의 개인 특성변수가 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경력있는 양호교사가 능력발휘를 잘 할 수 있도록 1급 자격연수와 같은 교육과정

은 물론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학교보건사업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양호교사의 배치율은 꾸준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학교보건업무를 충분히 수행하기에 불충분하다.

청소년의 건강문제는 신체뿐만아니라 사회적 정서적 영역으로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따라 도전받고 위협받고 있다. 학생들이 자기건강관리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양호교사의 적정수가 배치되어야 한다. 양호교사 수의 증감은 학교의 여러 가지 상황, 정책, 법, 인적 변수등이 관련되어 있다. 즉, 양호교사의 분포는 법의 제정과, 학교보건관련 조직, 학교보건정책에 영향을 받는다. 최근 교육부의 '99 교원 정원관리 현황 및 2000년 교원소요 정원 자료 요구서('99.3.22)'에 의하면 양호교사 정원산출기준을 '초등학교의 경우, 18학급 이상의 학교수와 무의촌 소재 학교수로, 중등학교는 18학급 이상의 학교수'로 정하여 시달한 바 있다. 이러한 정책은 양호교사분포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학생과 사회의 건강요구에 부응한 학교보건활동은 적정 양호교사의 배치로부터 가능하다. 학교건강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기적인 학교보건정책하에 양호교사의 인력수급 및 업무수행계획이 있어야겠다.

V. 학교보건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양호교사의 발전적 역할전환

학교보건사업활성화는 궁극적으로 학교건강증진을 실현하는 것이다. 학교보건의 핵심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양호교사에 대하여 정책지원 및 역할방향 방안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보건조직의 활성화와 학교보건정책의 체계화

1) 학교보건조직의 활성화

학교보건조직은 크게 중앙과 조직으로 구분되는데 최근의 정부조직개편으로 인해 중앙 및 지방조직이 위축되어 있는 상태이다. 학교보건은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계획되고 수행되어야 하는데 비해 최고정책수립기관인 중앙부처의 조직과 지방조직이 수시로 변화되고 인력이 조정되고 감축됨에 따라 총괄적인 건강관리정책개발 및 일선 학교보건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포괄적 학교보건업무수행을 위해 서울시를 비롯한 시도교육청에 학교보건과가 설치 운영되어야 한다.

2) 학교보건정책의 체계화

최근의 한 교육부 지침(양호교사정원산출기준 등)은 얼마나 민감하게 양호교사배치에 영향미치는지를 잘 보여주는 예이다. 교육은 백년대계이며 인력수급 또한 중요한 범주이다. 건강관리의 성과 또한 백년을 내다보아야 하는 중요한 사안이다. 지역별, 설립주체별, 학급규모별 차등없는 학교보건서비스의 제공은 국가가 지향해야 하는 기본 원칙이며 실현되어야 한다. 학교 건강관리책임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적정 양호교사배치 및 활동이 장려될 수 있는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2. 양호교사 배치기준 고려 및 배치율 향상

1) 지역별 설립주체별 학급규모별 양호교사 배치율 향상

학교보건사업의 활성화는 양호교사의 충분한 배치로부터 가능하다. 현재 양호교사의 배치율은 57%에 그치고 있다. 서울은 100%로 전국에서 가장 높지만 부산, 대구, 대전, 광주를 비롯한 광역시가 50~80%수준, 나머지도 수준에서는 25~40%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사립학교의 양호교사 배치율을 높여야 한다.

양호교사의 배치 기준에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 지역적인 특성이나 생활 환경, 주민의 보건 의료의 이해도, 경제력 등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2) 18학급미만의 초등학교에 양호교사 배치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6조 1항에는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양호교사 1인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18학급 이상의 학교에만 양호교사를 두는 배치 기준은 헌법과 학교보건법 시행령에 모두 배치되는 정책이다. 특히 초등학교에는 18학급미만이라 하더라도 양호교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현실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된 양호교사의 배치 기준은 조속히 재검토하여 시행되어야 한다. 평생 건강관리의 초석은 초등학교시절부터 형성되므로 건강한 생활양식습득을 위한 보건교육 및 건강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3. 보건교육의 강화

1) 보건교육교과목 신설 및 운영

학교보건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건교과목 설정이 필요하다. 물론 교과시간이 확보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교육과정이 체계적으로 편성되고, 이를 담당하는 교사가 충분한 지식과 교육법을 익혀 교육에 임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하드웨어적인 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교재와 교육법이 개발되어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보건교과목 운영에 있어 이미 일개 고등학교에서 선택과목으로 운영 실시되고 있고, 초등학교에서도 보건교과목으로 운영될 예정으로 있다.

전체적으로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9 초등1년-고1학년)의 교과 재량활동 시간이나 고등학교 2·3학년의 전문교과 선택과목에 보건교과를 설정할 수 있다.

2) 학교지역사회자원 활용한 보건교육특강

정규교과목운영도 중요하지만 학교와 지역사회간에 돈독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학교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는 특강도 좋은 방법이 된다. 실제로 각 분야 전문가를 초청하여 특강을 하였을 때의 효과가 좋았다는 예가 있다.

4. 학교보건사업의 내실화

1) 평생건강관리체계의 토대: 학교신체검사

지금까지 학교에서 실시되었던 신체검사는 체격, 체질, 체능검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체격검사는 키, 몸무게, 가슴둘레의 4개 항목이고, 체질검사는 영양, 등심대, 가슴통, 눈, 코, 귀, 목, 피부, 치아의 9개종목에 기타 질병, 기관력, 신경계통, 정신상태의 항목이 포함된다. 이러한 신체검사에 대해 그간 계속 형식적이고 신뢰성이 없다는 평이 있어왔고, 학생들의 변화된 신체상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왔다고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고등학교 학생의 병의원 신체검사가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신체검사의 실시 및 관리는 누가 할 것인가?

초등학교 입학시부터, 3년간격의 정밀한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은 기본적인 양호교사의 역할이면서 강화되어야 할 중요한 역할이라 하겠다. 정확한 신체검사자료는 평생건강관리체계의 토대가 되는 것이다.

2) 학생병리검사의 정교화

학생병리검사는 과거에 결핵검진과 기생충검사, 구강검사가 대표적인 검사였으나 최근에는 기생충감염의 감소로 기생충검사는 실시하지 않고 있다. 반면 새로이 검사가 실시되는 항목이 있는데 당뇨검사라던가 소변검사, B형 간염검사를 하고 있다.

건강에 대한 관심, 질병변화양상을 토대로 한 학생병리검사의 다양화는 필수적이며, 이에 대한 전반적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양호교사의 질병발생전 체계적 검진관리는 질병의 조기발견을 통해 학생의 건강한 학교생활 영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3) 학교환경관리의 철저

학교환경과 관련지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제도화하고 있고, 물리적 환경으로서 교실내 채광, 환기, 청소상태개선, 병소, 소독, 학교보건위생정비, 학생의 체격에 맞는 책상과 의자의 공급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학교환경은 학생의 건강에 중요한데 세간에 문제가 되고 있는 한 예로 학생의 휘어진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체격에 맞지 않는 책걸상과 무거운 책가방이다.

우선 하루에 1/3 이상을 학교에서 보내는 학생이 체격에 맞는 책걸상에 앉아 지내는 것에 대한 대비는 중요하다. 현재 중고등학생의 책걸상 호수별 치수는 1호에서 11호까지 신장과 체격조건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어 담임선생님의 관심과 배려가 우선된다면 별 문제가 없다고 보이는데 실제로 세심히 관심을 쓰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 양호교사의 관심과 교육이 필요하다. 무거운 책가방은 학생의 성장발육을 저해하는 요소로서 나타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별 사물함이 마련되거나 학교와 집에서 볼 수 있는 교재가 넉넉히 준비되어 있어 매일 들고 다니지 않도록 방안을 생각할 수 있으며, 주기적으로 학생의 책걸상과 학생의 체격을 검토하고 지도감독하는 양호교사의 활동이 요구된다.

4) 양호실 운영의 변환

양호실은 학교환경정화유지, 기생충구제, 결핵검진, 구강검사, 보건교육, 교내에서 발생하는 응급처치 및 사고자의 응급간호, 신체검사, 각종 질병발생 및 처치, 학교급식 등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 양호교사가 상주하는 공간이고 총체적인 계획 수행이 이루어지는 곳이기도 한데 향후 이 중에서 가장 많은 시

간이 할애해야 될 업무는 학생들이 자기건강관리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으며, 치료서비스와 더불어 개별 상담을 통한 보건교육과 예방서비스 업무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5. 양호교사의 연수기회확대

1) 자격연수과정의 다양화

양호교사가 현 시대에서 요구되는 보건교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1급 양호교사 자격연수과정이 개발되어 1996년부터 1급 자격연수과정이 실시되고 있다. 1급 자격연수과정은 3년 이상 양호교사로 근무한 사람을 대상으로 180시간(약 1개월)의 교육시간을 거쳐 획득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이 자격연수과정은 보건수업능력의 개발과 양호실과 학교환경에서 이루어지는 건강관리의 실체가 병행되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데, 교과과정내용은 인간, 건강, 건강행위, 환경의 개념을 기본으로 하여 건강유지 및 건강관리능력 개발이 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양호교사 1급연수과정후의 변화된 사항으로서 양호교사들이 보건수업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졌다는 점과 앞으로 보건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운영하게 될 경우 각급 학교에서 양호교사가 보건수업을 맡을 능력을 보유하게 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양호교사의 역할개발차원에서 자격연수뿐 아니라 다양한 연수기회를 부여하여 동기화를 촉진시키고 학생의 건강관리능력개발을 지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전문상담교사연수기회 부여

학교보건 업무 중 상담은 양호 아동 관리 및 문제아동 선도를 위한 양호교사의 필수적인 업무이며 더불어 교육활동의 연장이다.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양호교사와의 상담으로 도움을 받아 좋은 결과를 거두고 있음에도 상담교사 연수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전문상담교사연수에서 업무상 상담기법이 가장 필요한 양호교사를 연수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일은 부당하다.

교육부의 전문상담교사 부전공 연수 개설 기본(안)을 보면 초·중등 및 특수학교에서 2급 이상의 정교사 자격을 소지하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력을 가진 교사에게 65개 대학에서 연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99. 현재 1,900여명이 연수를 받고 있는데 양호교사는 제외되어 있다.

1996년부터 양호교사들은 1급 자격연수 실시로 상위 자격을 취득하여 교사로서의 위상을 제고하였으며, 98년부터 보직교사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현재 상담교사의 보직을 받아 훌륭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양호교사도 여러 명 있다. 양호교사에게도 전문상담교사연수 기회를 주어야 한다.

6. 양호교사의 질적 수준 강화

1) 양호교사의 자격기준강화

초·중·고등학교에서의 보건교육은 아동 및 청소년들의 자기 건강관리 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건강관리에 대한 교육자로서의 지식뿐만 아니라 철학적 소명의식과 교수·학습방법 등을 알고 있어야 하나 현재 이에 대한 사항이 다소 미흡한 편이다.

현재는 대학의 간호학과 졸업자로서 간호사면허증을 가진 자는 누구나 양호교사가 될 수 있으나, 앞으로는 간호대학 및 대학의 간호학과 졸업자로서 재학중 소정의 교직학점을 취득하고 간호사 면허증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대학의 간호학과에 입학한 후 장래 양호교사를 희망학생은 재학 중 소정의 교직학점을 취득케 하여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2) 보건교사로 개칭

양호교사는 일제시대에 일본사람들에 의해 호칭되었으며, 현재도 일본에서는 양호교사로 호칭되고 있다. 우리 나라는 일제 때부터 사용하였던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개칭한 바 있으며, 또한 '99년부터 양호실을 보건실로 개칭하였다. 최근 학교보건학계

에서는 학교보건사업과 우리의 정서에도 맞는 보건교사로 개칭하여 한국적 학교보건이 체계적으로 뿌리내리도록 해야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또한 현재 양호교사들은 보건실을 운영하면서 동시에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양호교사를 보건교사화함으로써 학교에 배치된 기존의 전문 인력을 적절히 활용함은 물론 비용절감과 더불어 보건교사 양성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3) 장학사 제도화

국·공·사립의 초·중·고등학교에서 학교보건계획을 수립하고, 환경위생의 유지 관리와 학생의 보건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양호교사가 6,000여명에 이르고 있음에도 각 시·도 교육청에 전문직(장학직)이 한사람도 없어 체계적인 장학지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타교과 전문직의 장학지도로는 충분한 전문성 지도가 미흡하다. 학교보건의 발전을 위해 양호교사의 교수 학습지도 개선을 위한 학교보건전문가의 전문적, 기술적 조언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1. 김영입, 학교건강증진 지표개발 및 측정에 관한 연구, 한국학교보건학회지 11권 2호, 1998
2. 김희중, 양호교사 분포양상과 관련요인분석,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4
3. 김희중, 윤순녕, 전경자, 학교보건과 간호. 수문사, 교육부 통계연보, 각 연도, 1999
4. 노일숙, 중등 1급 양호교사 연수전공과정교재,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1998
5. 한국학교보건교육연구회(1998, 1999) 건의문

<부록> 표 1. 연도별 양호교사의 분포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양호교사수	1,823	2,037	2,199	2,611	2,758	2,874	3,000	3,165	3,357	3,706	3,912	4,066	4,240	4,380	4,992	5,567	5,875	5,932
양호교사 1인당 학교수(개)	5.5	5.1	4.6	4.0	3.8	3.7	3.5	3.3	3.2	2.8	2.7	2.6	2.5	2.4	2.1	1.8	1.8	1.7
양호교사 1인당 학급수(개)	100.4	91.0	85.8	71.7	69.8	68.9	66.6	63.9	57.6	56.1	53.2	51.1	48.8	46.9	41.2	37.0	35.3	35.4
양호교사 1인당 학생수(명)	5,476	4,905	4,521	3,784	3,555	3,424	3,228	3,053	2,863	2,549	2,357	2,224	2,84	1,984	1,716	1,517	1,417	1,382
학교 양호교사배치율(%)	18.0	19.7	21.4	24.9	26.1	26.9	28.1	29.7	31.6	34.9	3.1	38.7	40.3	41.9	48.0	53.5	56.2	56.69

<부록> 표 2. 연도별 학교급별 양호교사의 분포

	1981				1982				1983				1984				1985					
	초등	중등	일반고	실업고	초등	중등	일반고	실업고	초등	중등	일반고	실업고	초등	중등	일반고	실업고	특수	초등	중등	일반고	실업고	특수
양호교사수	1302	269	132	120	1437	315	151	134	1522	346	173	158	1781	406	195	159	70	1846	468	203	160	81
양호교사 1인당 학교수(개)	5.0	8.1	5.9	5.2	4.5	7.0	5.4	6.1	4.3	6.5	4.9	4.0	3.6	5.7	4.6	4.0	1.1	3.5	5.1	4.7	3.9	1.1
양호교사 1인당 학급수(개)	861	1473	131.7	116.6	77.9	128.9	119.5	110.8	73.6	120.9	110.8	98.1	59.9	106.5	104.8	99.6	13.3	58.9	96.3	107.6	99.7	12.8
양호교사 1인당 학생수(명)	4291	9568	7623	6806	38.3	8265	7.78	5661	3454	7723	6545	5575	2830	6738	6156	5609	179	2631	5940	6240	5537	176
학교 양호교사배치율(%)	19.9	12.4	16.9	19.3	22.1	14.2	18.6	16.2	23.4	15.3	20.2	24.7	27.3	17.5	21.5	24.7	89.7	28.3	19.7	20.9	25.2	94.2
	1986				1987				1988				1989									
	초등	중등	일반고	실업고	특수	초등	중등	일반고	실업고	특수	초등	중등	일반고	실업고	특수	초등	중등	일반고	실업고	특수		
양호교사수	1860	517	231	184	82	1903	561	250	195	91	1930	613	297	228	97	1994	671	350	246	96		
양호교사 1인당 학교수(개)	3.5	4.6	4.3	3.4	1.1	3.4	4.3	4.1	3.0	1.0	3.3	3.9	3.6	2.6	1.0	3.2	3.6	3.1	2.4	1.0		
양호교사 1인당 학급수(개)	59.3	89.6	101.7	90.8	14.3	58.8	82.9	98.4	79.4	14.7	58.8	75.2	87.1	68.5	15.4	58.2	67.5	77.0	63.8	16.9		
양호교사 1인당 학생수(명)	2580	5349	5824	4984	191	2507	4737	5589	4309	191	2497	4116	49.8	3697	189	2454	3534	4259	3385	199		
학교 양호교사배치율(%)	28.4	21.4	23.2	29.1	91.1	29.1	23.1	24.3	32.8	96.8	29.8	25.2	27.9	38.6	100	31.2	27.4	32.3	41.8	96		
	1990				1991				1992				1993									
	초등	중등	일반고	실업고	특수	초등	중등	일반고	실업고	특수	초등	중등	일반고	실업고	특수	초등	중등	일반고	실업고	특수		
양호교사수	2133	835	382	256	100	2304	843	397	267	101	2414	855	355	292	102	2541	891	402	303	103		
양호교사 1인당 학교수(개)	2.9	2.9	2.8	2.3	1.0	2.7	2.9	2.7	2.3	1.0	2.5	2.9	2.7	2.3	1.0	2.4	2.9	2.6	2.4	1.0		
양호교사 1인당 학급수(개)	55.1	54.3	71.9	61.4	17.6	50.8	54.2	68.8	60.6	18.3	47.3	55.5	67.0	57.9	19.0	44.0	55.7	63.9	58.3	18.9		
양호교사 1인당 학생수(명)	2282	2725	3856	3166	200	2065	2648	3544	3011	200	1889	2701	3324	2782	202	1706	2706	3077	2746	204		
학교 양호교사배치율(%)	33.7	33.8	34.8	43.6	96.1	36.9	33.7	36.6	43.3	99.0	39.4	34.1	37.3	43.1	99.0	41.9	34.4	38.7	42.2	97.1		

	1994					1995					1996					1997				
	초 등	중 등	일 반 고	실 업 고	특 수	초 등	중 등	일 반 고	실 업 고	특 수	초 등	중 등	일 반 고	실 업 고	특 수	초 등	중 등	일 반 고	실 업 고	특 수
양호교사수	2562	998	400	316	104	3103	991	442	351	105	3602	1020	466	371	108	3776	1057	518	403	111
양호교사 1인당 학교수(개)	2.3	2.6	2.6	2.3	1.0	1.8	2.7	2.4	2.2	1.0	1.6	2.6	2.3	2.1	1.0	1.5	2.5	2.1	1.9	1.0
양호교사 1인당 학급수(개)	42.4	51.4	63.8	57.6	19.1	34.5	51.9	58.7	54.2	19.6	29.6	50.2	57.2	52.4	19.5	28.5	46.8	53.5	48.8	20.4
양호교사 1인당 학생수(명)	1600	2514	3023	2694	204	1258	2504	2820	2596	206	1055	2333	2798	2532	202	1002	2043	2658	2382	203
학교 양호교사배치율(%)	43.4	37.7	38.2	42.8	98.1	53.7	36.9	41.3	46.1	97.2	62.8	37.7	42.9	48.1	99.0	66.0	39.2	46.2	52.2	97.3

	1998				
	초 등	중 등	일 반 고	실 업 고	특 수
양호교사수	3793	1081	543	403	112
양호교사 1인당 학교수(개)	1.5	2.5	2.1	1.9	1.1
양호교사 1인당 학급수(개)	29.0	45.6	52.6	48.8	21.4
양호교사 1인당 학생수(명)	1011	1861	2577	2301	207
학교 양호교사배치율(%)	66.6	39.5	47.2	52.2	94.9

<부록> 표 3. 지역별 설립주체별 학교급별 양호교사의 배치율

연도	1981년				1991년				특수	1998년				
	초등	중등	일반고등	실업고등	초등	중등	일반고등	실업고등		초등	중등	일반고등	실업고등	
서	국공립학교	97.70	100.00	100.00	100.00	97.93	90.86	100.00	100.00	100.00	96.51	93.38	96.68	100.00
울	사립학교	56.41	67.71	76.53	89.74	66.66	76.92	85.71	12.59	100.00	79.48	75.67	93.18	83.58
부	국공립학교	64.08	25.00	6.66	90.90	84.18	86.02	62.07	100.00	100.00	92.00	77.87	51.43	73.33
산	사립학교	28.57	7.32	4.54	23.07	0.00	26.83	0.00	25.00	100.00	0.00	17.17	9.09	16.66
경	국공립학교	13.10	15.48	9.09	11.47	36.15	52.15	52.50	29.63	100.00	69.29	63.31	18.60	50.00
기	사립학교	0.00	5.31	11.62	16.17	0.00	12.50	34.92	38.77	100.00	0.00	20.48	66.66	63.15
강	국공립학교	9.39	2.27	2.13	0.00	21.93	17.01	19.35	37.50	100.00	45.82	32.64	44.00	63.63
원	사립학교	0.00	10.00	0.00	25.00	0.00	0.00	0.00	0.00	100.00	0.00	6.66	58.33	83.33
충	국공립학교	18.73	4.65	0.00	20.00	39.07	23.59	34.48	57.14	100.00	94.09	27.08	35.48	58.33
북	사립학교	0.00	0.00	10.00	0.00	0.00	0.00	0.00	28.57	80.00	0.00	45.00	53.84	50.00
충	국공립학교	14.43	3.84	4.08	0.00	24.55	18.89	29.54	56.52	100.00	68.43	22.14	36.11	58.82
남	사립학교	0.00	1.19	0.00	35.00	0.00	0.00	7.69	11.11	100.00	0.00	0.00	11.54	10.00
전	국공립학교	20.89	2.34	11.76	9.09	24.53	17.77	34.78	61.11	100.00	60.60	18.05	63.16	52.27
북	사립학교	0.00	8.62	25.80	16.66	0.00	16.07	50.00	30.43	100.00	0.00	33.33	59.46	48.00
전	국공립학교	21.23	0.85	4.16	4.76	24.43	10.76	14.81	29.54	100.00	43063	16.89	26.66	28.57
남	사립학교	50.00	1.66	6.81	20.00	100.00	7.50	3.03	23.07	100.00	100.00	10.25	17.65	38.46
경	국공립학교	19.22	6.48	3.28	4.44	24.18	19.32	38.33	21.74	100.00	61.48	27.40	41.51	45.09
북	사립학교	75.00	2.50	6.33	14.00	100.00	1.17	2.85	21.43	100.00	100.00	2.56	6.06	10.00
경	국공립학교	6.92	0.62	0.00	0.00	24.33	26.18	42.22	24.39	100.00	52.73	26.47	34.00	57.57
남	사립학교	0.00	0.00	0.00	14.63	0.00	0.00	12.00	25.71	100.00	0.00	0.00	4.54	17.65
제	국공립학교	5.22	0.00	0.00	0.00	22.61	18.75	22.22	88.88	100.00	40.56	26.47	44.44	88.88
주	사립학교	-	0.00	0.00	0.00	-	0.00	14.28	50.00	100.00	-	0.00	28.57	66.66

자료원 : 교육부 통계연보('81-'98)